

Spring Vol.9 신바람 나는 일터

희망설천

EM
Empowerment Society
설천



Contents

Spring Vol.9

- 03 2011년 희망풍선
- 04 2011년 희망열차
- 06 2011년 EM실천 사업목표
- 08 전자바우처란 ?
- 10 2011년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 13 「운영위원회에게 듣는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교수님
- 14 글 | 후원자 김지상님의 글 |
- 16 EM실천 1분기 소식
- 19 2010년 결산 및 2011예산(안)
- 20 광고 |  사랑의열매 |

발행일 2011. 5. 1

발행인 김영환

발행처 EM실천

만든이 EM실천 총무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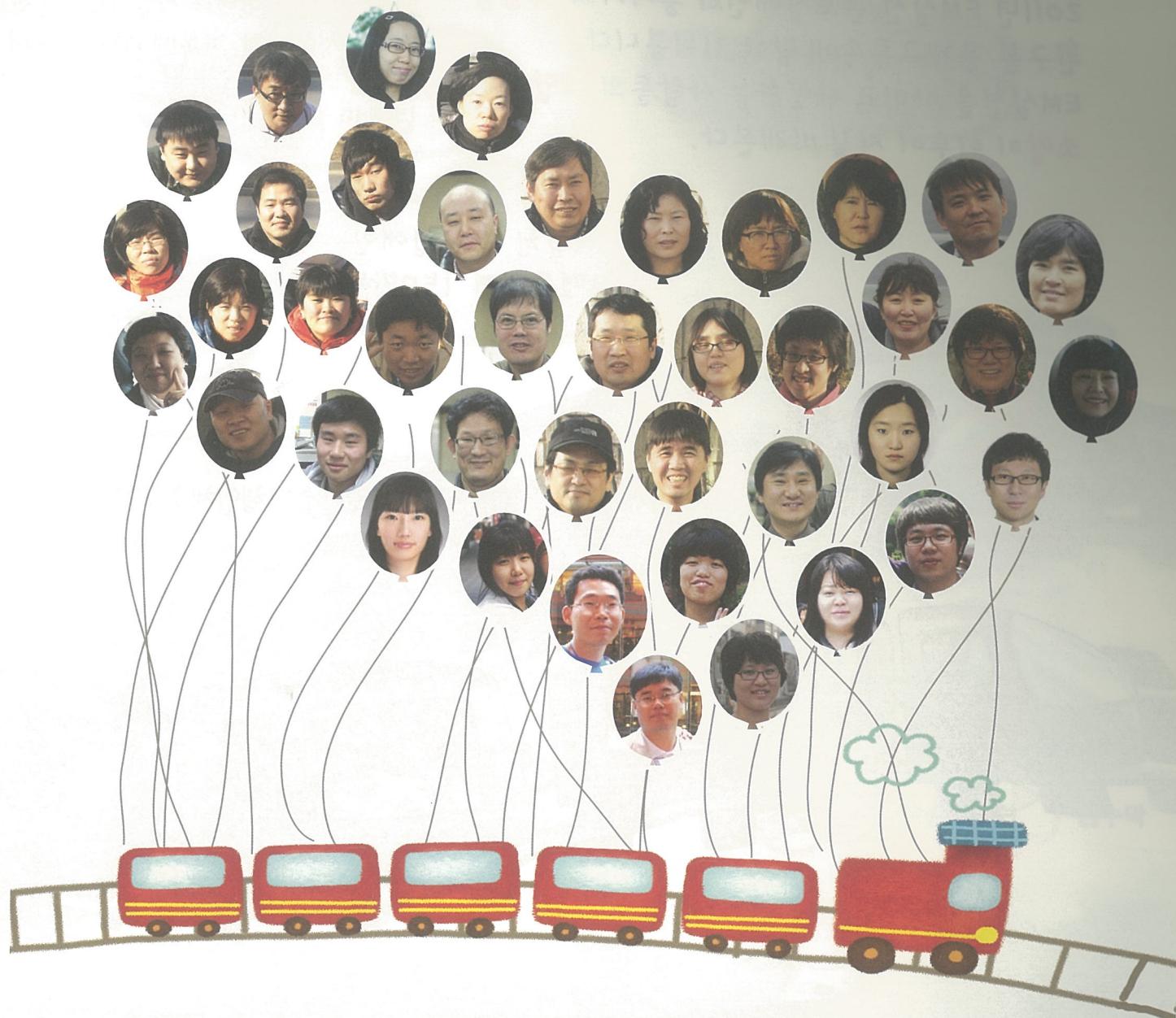
전 화 02.875.9744, 9733

팩 스 02.875.9965

홈페이지 www.em21c.com

“ 「EM실천」은 Empowerment Society의 줄임말로 개인의 역량강화, 조직의 역량강화,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의 동반자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EM실천**은 우리들만의 **희망**실천이 아닌 모두의 희망실천이 되는 희망**풍선**이되어 사회의 이곳저곳을 날아가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2011년 EM실천 근로장애인과 종사자의 **희망**을
흰구름 뭉게구름속에 담아 키워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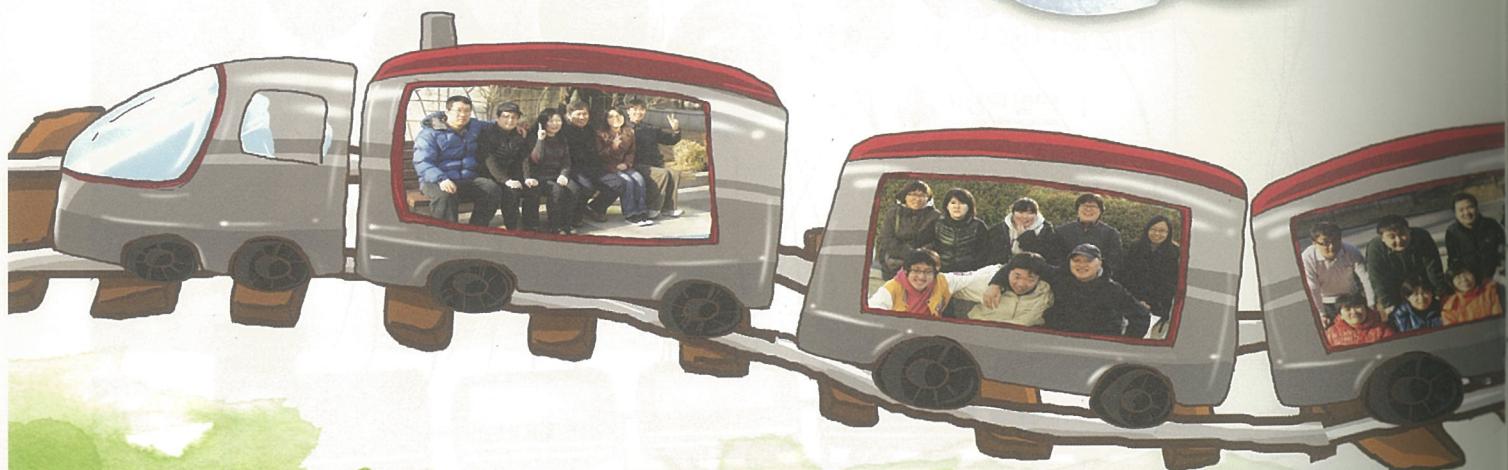
EM실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 지길 바래본다.

안정된 훌륭한 직업생활을 통한
정신장애 회복패러다임 제시

EM실천 근로장애인
월평균급여 150만원

10대 기획인센티브 설정

3대 우편발송대행업체로 부각



대기업 사회공헌팀 EM실천의
성공전략 마케팅

장애인 일자리정책마련의
선두주자 EM실천

장애인 50인업체로 성장



*EM실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인쇄



우편발송



현수막

1.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 매출 사업과 관련 전문 인력채용
- 매출 참여인원중 고령자, 여성, 장애인등의 취약계층 채용
- 사업별 세부화, 전문화를 통한 사업안정화 모색



2. 금천구에서 복지 인프라구축의 중심으로 성장

- 직업재활 서비스의로를 통한 사례관리
-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정보 공유글 통한 사례관리
- 눈부신 금천구의 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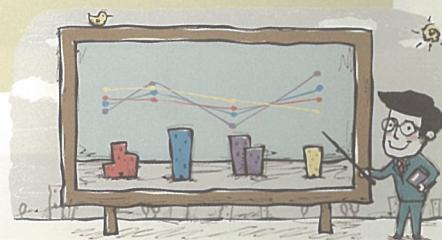
3. 사례관리사업의 내실화

-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재활계획 → 평가 → 고용으로의 체계적 직업재활 사례관리
- 근로능력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급여테이블 마련



4. *New* 직업재활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강사활용을 통한 프로그램질 향상
-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는 신규프로그램 개발



5. 직원의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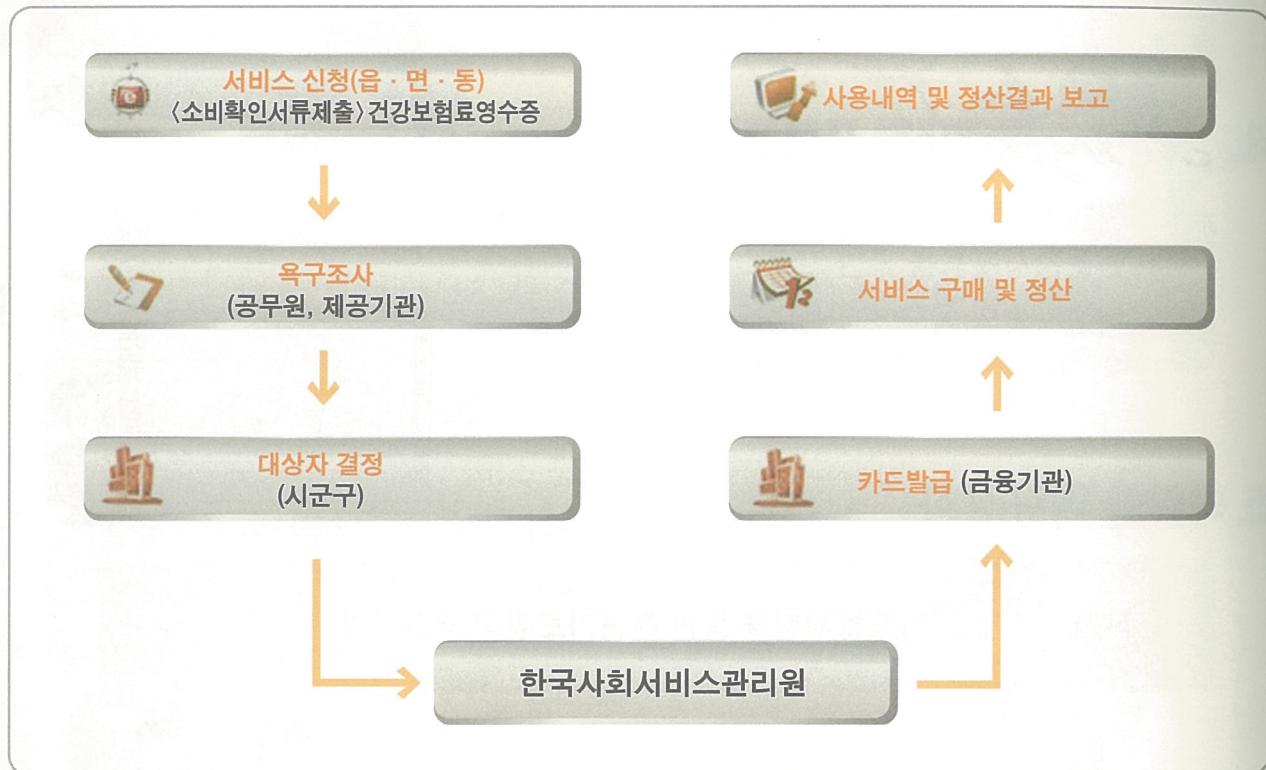
- 직원교육 및 자기개발계획을 통한 전문가로써의 역량강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 바우처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의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 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됩니다.

● 바우처 업무처리 프로세스



2011년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 진행중인 사회서비스

능동적복지와 함께 하는 사회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바우처 VIP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VIP란? 당신을 위한 VIP(Voucher Individualized Program)서비스입니다.
한울에서 당신은 늘 VIP(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한울 VIP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사업운영을 지정받아 운영되고,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재개방문을 통해 1:1 개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11년 올해 처음 도입한 정신건강토탈케어 바우처 사업, **한울 VIP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오랜 기간 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에 맞는 개별 맞춤식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발방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대상

정신장애등록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자 중에 도시근로자 기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바우처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수급자 면제, 차상위 외 2천원-2만원/ 정부지원금 18만원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 개인별 맞춤 서비스, 부가서비스로 재개방문을 통해 주1회 60분 제공됩니다.

- ◆ 기본서비스
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신체건강관리, 여가활동증진, 사회적응 및 참여지원, 가족상담
-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욕구 사정평가 후 위기형(Crisis care Type), 일상형(Day care Type), 사회형(Social care Type), 취업형 (Job care Type) 으로 1:1 개별 서비스 제공
- ◆ 부가서비스
가족나들이, 문화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 신청대상: 만성정신장애 및 정신질환으로 인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그밖의 관계인
- ◆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 신청기간: 연중 수시(지자체별로 신청기간 지정으로 결정) *단 매월 21일까지 전산전송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 제출서류: 신청서 이외에 시군구별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기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피악

차상위계층 초과: 근로자의 경우 사업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청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년도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고지서 사본)

서비스의 대상자와 주소가 다른 가족(주 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주 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주 부양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문의전화 ◆ 한울사회서비스 사업단 대표전화: 070-4025-9964

1.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대상 확대

2011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차상위 초과계층인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만원의 부가급여를 지급함.

독이 든 사과 “장애인활동지원법”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2만원 인상을 위해 313억원을 증액, 통과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的 문제는 등급제한과 자부담 제도이다. 등급제한이란 현행처럼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장애 1급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 2급이라 할지라도 혹은 3급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정한 매뉴얼에 따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활동보조 서비스가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1급만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10년 정부는 활동보조 신규신청자를 포함해 기존 2년 이상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등급 재심사를 전면적으로 진행했고 재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을 적발, 정말 필요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장애인복지예산이 축소되고, 가짜 장애인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등급심사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심사 결과 1급이 2급으로 조정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끊기는 일이 수없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애 1급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급하락은 결국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등급 하락 피해는

더욱 넘쳐나고 있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았다가 장애등급이 2급으로 하락돼 기준 받던 활동보조서비스마저 끊겨버리거나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콜택시 등의 기타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자부담 제도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며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하면 본인부담률이 15%로 되어 있다. 15%는 월 20-30만원 정도로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에서 배제된 상황일 때 본인부담 비용은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좋은 제도와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들이 그 문턱을 넘기기에 우리의 복지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 2011년 달라진 장애인복지사업 중 하나인 본 장애인연금부가급여대상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이용자들이 원활히 그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이지 않을까 본다



2.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유형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 보급하여 일을 통한 최고의 복지를 실현함 * 2010년 총 6,920명 -> 2011년 총 10,300명에게 일자리 제공

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확대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EM실천이 위치한 서울시의 장애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뉴스를 살펴본다.

서울시는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1,013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빌려 및 보급하고,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70억 원을 투입해 기존 7개월이었

던 사업기간을 9개월로 연장했으며, 행정도우미 18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7명 등을 중원했다.

2011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복지일자리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등 3개 분야로 복지일자리에 배치될 450명은 1월~9월까지 관공서 청소도우미를 비롯해 교통질서 안내 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 11시간(월 44시간) 일을 하게 되며 격일제 등 조정이 가능하다. 임금은 월 20만 원. 동주민센터의 행정보조 업무와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도우미사업 종사자 500명은 1~12월까지 하루 8시간, 주 32시간 일을 한다. 4대 보험을 포함해 월 85만5천원을 받으며, 퇴직금은 85만5천원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에 배치되는 63명은 노인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에게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전문 안마서비스를 1일 5시간 씩 주 25시간을 제공하며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4대 보험 포함) 서울시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얼마든지 일반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자치구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1,267명이 신청하는 등 1.33: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일자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솔깃한 뉴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한 걸까요. 또한 모든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자리는 계약직으로 장기적인 취업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목숨보다 더 심한 계약직에 저임금정책, 복지부와 서울시는 보이기식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세심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EM실천에서 직업훈련 중이 정신장애인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확대

- 장애아동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해 드림.

대상 : 자폐성, 지적장애아동 등 중증장애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320시간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현재 장애아동 돌봄 도우미 제도는 소득기준때문에 아깝게 지원 못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은 소득이 약간 높다고 해서 장애아동 돌보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차라리 소득으로 제한해서 장애가족을 도와주는 형식적인 정책보다는 장애아동을 둔 모든 가족은 언제든지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예를 들면 대학내 개설된 특수학과 관련 학생들에게 장애아동 돌보미 실습현장 같은 내용을 이수하게끔 해서 장애가족도 도움받고 특수학과 관련학생들도 실질적인 장애이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면 어떨지....” (DAUM 블로그의 날드는 달팽이님의 글 인

용)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확대라는 제목과는 달리 지원내용이 매우 미약하네요. 돌봄서비스가 아닌 양육서비스의 확대나 보육료 무상지원등은 어떨까요. 무상지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여전히 우리사회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 공공기관은 2011년부터 품목 구분 없이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함.

변화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경과

- ’99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국가등의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의무화
- ’00 복사용지등6개품목, 2%~20%로우선구매시작
- ’04 17개품목, 5%~20%로우선구매품목및비율확대
- ’06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법적의무권장사항) 실시
- ’07 18개품목으로확대(화훼및농산물추가)
- ’0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정및시행
- 중증장애인생산품에노무용역등의“서비스”포함

- 2011.1.1부터 공공기관별총구매액의1/100 이상을구매토록함
(제정목적)

- 국가및공공기관에서는중증장애인생산품에대하여우선적으로구매하도록함-구매대상기관은매년구매계획및구매실적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에제출

- 우선구매비율: 18개품목(5~20%) ⇒ 대상기관총구매액의1%이상으로확대

- 우선구매대상: 18개품목 ⇒ 전품목및서비스 · 용역까지확대(단, 공사는제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와 기존우선구매제도비교

구분	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적용시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제44조 - 시행령제28조, 29조 - 시행규칙제34조~ 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시행령
우선구매 품목	· 제조품으로한정 18개품목	· 제조품및용역등의서비스까지확대-별도로품목을제한하지않음
구매비율	· 18개품목별 5% ~ 20%	· 해당기관의 총구매액의100분의1이상(단, 공사는제외)
우선구매촉진계획	· 미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수립하여공고 · 공공기관구매실적및구매계획포함
생산시설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애인5명이상 · 총근로자중장애인이100분의70 이상 (중증장애인은 1.5배수산정) · 직접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애인 5인이상 · 총근로자중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 장애인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 · 생산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근로시간 100분의 50이상 · 직접생산(원부자재및생산설비등확인)
생산시설 지정 및 공고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들의 직업적 자립(재활), 고용기회확대, 장애인의 소득향상 등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EM실천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을 받았지만 생산품판로개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홍보, 생산품에 대한 품질향상 등이 마련되고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책마련과 생산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쭉~~필요할 듯합니다.

글. EM실천 선임팀장 박미선

365일

봄기운이 가득한 EM실천이 되리라

처음에 글을 써 달라고 부탁받았을 때는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을 두고 내가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서 글쓰기를 수락하였다.

정신보건사회사업가로 처음 일을 시작했던 사회초년병 시절, 내가 일하던 기관은 치료 및 사회재활 위주의 접근을 하는 ‘전통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이었다. 이때 개인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것이 있었다. 당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증상이나 기능적으로 안정된 분들이 많아서 전통적인 접근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개인적으로 정신장애인을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에게 맞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아실현을 할 기회를 갖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이나 EM 실천과 같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정신장애인 재활에 큰 전환점이 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된다.

정신장애인에게 ‘일’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에 부응하는 소득, 사회적 지위, 관계, 등을 통해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직업을 통한 시간

이나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및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형성을 통해서 기능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이다.셋째, 직업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이러한 소득, 지위, 관계, 기능, 등은 전체적으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내가 EM실천을 처음 방문하던 날... 첫 느낌은 예상했던 것 보다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과, 일하고 계시던 분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이었다. 일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인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분도 계셨고, 인사를 건넸을 때 주저 없이 나에게 밝은 답인사를 보내주셨다. 이러한 EM실천의 일하는 모습은 내가 정신보건사회사로 일하던 전통적인 지역사회정신보건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에 지금도 처음 방문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다.

꽃샘추위로 요사이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헛살이 비치는 낮에는 봄기운을 느끼기 충분하다. 또한 머지않아 봄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결국 봄기운이 추위를 물리치듯이,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현 상황이 충분히 좋은 것은 아니지만 봄기운을 몰고 오는 봄꽃과 들풀들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생각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상경 교수님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말을 잊으랴

봄이 오면
생기가 돌아나고
기운이 차다

봄이여 빨리 오라

위 글씨는 EM실천에 후원해주시는 김지상 님이 직접 써주셨습니다. 멋진 글씨만큼 선한 맘의 후원자입니다.
천상병시인의 『봄을 위하여』라는 시를 읽고 멋진 글씨도 보니 어느새 봄이 우리들 맘에 와 있습니다.

봄을 위하여

천상병

겨울만 되면

나는 어제나

봄을 기다리며 산다

입춘도 지났으니

이젠 봄기운이 화사하다



1. 법인 사업자로 변경(1.1)

2011년 1월 1일자로 EM실천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전의 사업자번호를 법인격 사업자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EM실천은 시설의 자생력강화와 활발한 조달등록, 입찰참가 등을 위해 법인격 사업자로 변경하였으며 이전보다 더 활발한 영업과 매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 2011년 첫 운영위원회(1.28)

노동부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면서 2011년도 첫 운영위원회의 의미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것 보다도 운영위원회의 의미와 활동이 활발한 때입니다. 2010년의 사업평가, 2011년의 사업방안 등을 모색하고 특히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신 최병태 운영위원장, 김용득운

영위원(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태섭운영위원(금천구의원 복지위원장), 박태준운영위원(노무법인한길), 강상경운영위원(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EM실천의 사업발전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계속됩니다.

3. 겨울방학실습(1월~2월)

2011년 한해를 시작하며 EM실천에 2명의 실습생이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늦깎이 학생들로 구성된 금번 실습을 통해 노력하는 자들의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습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직원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실습생이었고 한달의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실습에 임해주신 신정훈, 정한필 선생님께 감사와 수고의 인사를 보냅니다.

4. 직업체활시설 견학을 위한 기관방문

- 2011년 3월 15일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의 지역사회기관방문을 위한 목적으로 10명의 정신장애인들과 담당사회복지사들이 내방하셨습니다. 병원퇴원후 약물관리 교육, 대인관계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체활서비스를 계획중인 참가자들은 EM실천의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더군요. 이제 EM실천의 입사지원서를 계획중인 그들에게 이곳이 좋은 직장과 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래보며 앞으로도 EM실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 강원도 원주의 행복공감 직업체활시설의 정진애원장님과 배각호 직업훈련교사가 방문하여 시설의 유형재편과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5. 최저임금 적용제외신청과 현장평가 실시 (3. 24)

관악노동지청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신청을 올해에도 수행했습니다. 금번엔 총 18명의 근로장애인이 적용제외대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적용제외대상신청을 안해도 될 만큼 수의사업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6.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노동부사회적기업신청으로의 도전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사업의 박차를 기하고 있는 EM실천은 2010년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노력중이고 2011년 3월 노동부사회적기업을 위해 여러차례 컨설팅을 통해 노동부 사회적기업 신청을 마쳤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니 EM실천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응원 부탁드립니다.

- 노동부사회적기업현장방문: 2011년 4월
- 선정결과일정 : 2011년 5월 중



7. 2011년 직원동향 (입퇴사)

- 이승환 사회복지사, 서소연 사회복지사가 퇴사
- 이상훈, 이한미, 김영신님(서울형 사회적기업인력) 3명 퇴사
- 박형철 사회복지사(중증장애인지원사업), 고미나사회복지사 입사

(복직)

- 박미선 팀장(출산휴가 2010년 11월 ~ 2011년 1월) 복직

(교육)

- 사회복지정보시스템교육, 박미선팀장, 고미나사회복지사
- 서울형사회적기업재무회계 교육 박미선팀장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시설장대회
김영환원장, 임성수팀장
-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신규교육 박형철사회복지사
- 한국산업안전협회 관리감독자교육
김형광실장



8.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평가실시 장애인직업평가를 실시

근로장애인 총 30명중 1차로 12명의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 실시되었습니다. 장소의 협소로 인해 직업 평가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객관화된 도구와 전문평가사님들의 직업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9. 차성수 금천구청장님의 기관방문(2.17)

지역사회복지시설 방문 일정으로 EM실천에 금천구청장님이 방문하셨습니다.

10. 가족모임 '희망회' (2.16)

2011년 첫 가족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진행된 가족모임 '희망회'에 16명의 가족분들이 참여하여 2011년 희망회의 연간일정을 계획하며 반가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도 '희망회'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자리를 빛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위:천원)

세 입			세 출		
예산과목	2010년 결산	2011년 예산	예산과목	2011년 결산	2011년 예산
총계	2,130,737	2,130,214	총계	1,810,789	2,033,214
사업수입	1,572,633	1,530,000	사무비(인건비)	475,031	519,660
보조금수입	132,694	143,794	운영비	101,974	130,000
기타보조금수입	103,863	73,120	사업비	1,132,935	1,281,454
이월금	287,087	276,700	복지비	10,388	11,000
잡수입	34,460	9,600	홍보비	90,461	91,100



EM실천 새로운 일꾼을 모집합니다.

- 등록장애인 만 18세 이상 ~ 55세 미만
- 일할 의욕이 있는 분



EM실천 후원안내

EM실천은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EM실천의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 있길 바랍니다.

후원계좌 : 하나은행 577-810031-14505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으며 30명의 중증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이 함께 일하는 착한 기업 입니다.



EM실천 일거리 후원

EM실천은 **인쇄**, **우편발송대행**, **현수막 인쇄** 등의 수
익사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자
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 **우편발송대
행**, **현수막인쇄** 등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문 의 : 02-875-9744, 9733

자원봉사 모집 안내

“봉사는 나누면서 내가 더욱 ‘살찌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
‘한 번만 봉사를 해도 괜찮을까? 이번에는 기간이 있는데..’
정기적인 봉사가 아니어서 걱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01 | 내 · 외부 행사 보조 지원
- 02 | 일거리 작업참여
- 03 | 전문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함께 나누는 작은 사랑의 시작! ^

사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은 일상의 **작은 여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1,000원의 작은 정성은 1만원의 정성을 모을 수 있고,

1만원의 정성은 10만원의 큰 정성을 모을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함께 나누는, 작은 사랑의 시작에
당신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성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1항 9호에 따라 전액이 손비처리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기탁하시면
'사회공익 활동'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함께 손금산입을 통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CMS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 후원참여 동의서를 작성해 팩스(02-324-7447)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ARS 모금 060-700-1212

매달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후원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후원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참여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누군가의 희망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ARS 060-700-1212'입니다.

전화 한 통화당 2,000원씩 적립됩니다.

지하철 모금 & 1회용지하철카드 모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당신 가까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9호선 전 역에 모금함을 이용해주세요.

사랑의 계좌(예금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지회)

우리은행	015-176590-13-503	외환은행	118-22-02430-2
국민은행	009-01-1306-221	하나은행	137-337891-00104
농 협	056-01-103831	기업은행	035-038974-01-011
신한은행	100-013-523932	SC제일은행	130-10-012398
수 협	056-01-103831	한국시티은행	100-59719-255
우체국	010041-01-015621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월『사랑의 열매』소식지를 EM실천에 우편발송대행하고 있습니다.